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97,719,798	23,931,594
일반회계	706,485,956	21,194,579
특별회계	91,233,842	2,737,015
공기업특별회계	60,447,660	1,813,430
상수도사업	21,319,647	639,589
하수도사업	39,128,013	1,173,840
기타특별회계	30,786,182	923,585
의료급여기금	2,134,912	64,047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317,283	39,518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55,716	7,67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271,189	8,136
수질개선관리	6,227,320	186,820
농공지구조성	3,613,462	108,404
중소기업육성자금	5,843,137	175,294
농업발전기금	11,123,163	333,69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312,424천 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2,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